

국민신문고

수신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신고제도 불합리사항개선요청의건 (중요)

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첩발급수수료 및 경력관리비문제

(국토부로부터 경력관리, 직무교육 등 위.수탁 업무대행업체)

위수탁업무 경력관리 현황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및 선임신고 순서 및 구비서류

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신고서제출 → 수첩발급신청 → 수수료결재(12만원) → 접수완료 → 수첩발급 (구비서류: 경력확인서, 경력신고서, 해당자격증사본)

② 협회에서 수첩을 발급받은 다음

→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구비서류 : 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사본)

2.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수첩발급받은 사람들로부터 경력관리비를 매년 5만원을 수납하고있다

2. 불합리한사항

첫번째

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서를 받고 수첩을 발급 해주고 수수료를 12만원 고액을 수납하고있다

이직또는 관리건물변경시마다 수수료 1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됨

② 경력관리비란 명목으로 하는일 없이 연회비를 오만원을 수납하는것은 (무노동유임금)

**근생시설 업무용 건물에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데 모든 안전관리자선임부터 교육수강 및 비용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중에 하나인것이다

주변에 건물관리소장들 모두가 이런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소장들의 불만내용과 의견을 취합하여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3. 개선 및 시정조치요청내용

I.수첩발급수수료 및 경력관리비 수납문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서를 받고 수첩을발급 해주고 수수료를 12 만원
고액을 수납하고있다

-경력관리비란 명목으로 하는일 없이 회비를 오만원을수납

* 수많은 각직종별 협회에서 자격증, 자격수첩을 발급할때와 관리비를 연회비를
고액으로 받는곳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발급수수료는 건당 평균 2,000 원~17,000 원)

비용결정관련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제18조(경력관리위원회) 5.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제19조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뿐,

비용금액에 대한사항은 법령,행정규칙,별표중에 어디에도없다

“수탁기관이결정하여 시행한다 국토부와사전에 협의한다”라고 애매한 내용뿐이다

II.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및 선임신고문제

1.현재선임신고 순서

①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신고서제출→수첩발급신청→수수료결제(12 만원)→접수완료-
→수첩발급 (구비서류: 경력확인서,경력신고서,해당자격증사본)
→협회에서 수첩택배발송→수첩도착 (인터넷접수완료후 수첩도착까지 15 일소요되함)

②협회에서 수첩을 발급받은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구비서류 : 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사본)

→시청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제출 즉시접수처리

[현재문제점]

- 협회 수첩발급기간 10 일이상 소요되며, 수수료비용 부담증가
- 각건축물 해당되는 안전관리자(전기,소방,승강기,상수도등등)선임 신고는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간편한데 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방법은 불편하다

*** 건물 등급에 따른 자격,경력확인을 시.구청에서 간단히 확인할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건당 12 만원을 받도록 특혜를 준것은 협회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토부 협의한담당자들 조사가필요 할수있으며, 수많은 업종의 해당자격증을 갖고 선임신고를 하는데이런경우는 전무,후무할것이다

협회에 등록된 유지관리자등록인원은 약 62.000 명(2024 년 4 월현재임시~특급)

수첩발급 62.000 명* 건당 12 만원=74 억 4 천만원

경력관리비(연회비)62.000 명*50,000 원=년간 31 억

시.구청에서 경력확인(재직증명, 졸업증명,해당자격증)만 간단히 하면 선임신고가 되는것을 전국에 소상공인들은 대략 100 억이라는 엄청난 큰돈을 협회에 지불하도록 합의한 국토부 담당자와 협회 경력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감사또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처해야 할것으로 본다

* 시.구청 건축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담당자가 선임신고시 경력확인서와 해당자격증만 확인하면 될사항을 협회에 위탁하도록 결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어떤청탁에 의하여 또는 지시에의거 진행되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경력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이유

시.구청 건축과에는 건축물허가부터 준공까지 전반업무와 도면을 비롯한 모든자료가 전상망으로 구축되어 있는중에서

- 건축물관리법에 해당되는업무전반자료(건물통계, 관리계획서,정기점검업체지정 보고서관리등등)
-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기계설비유지관련업무 (관리자,선해임신고)
- 유지관리대상건물통계,성능점검대상건물관련업무 안내문발송 및 성능점검보고서관리등등)

그중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선임신고시 구비서류에 경력확인서 포함하여 경력내용만 확인하면 간단한것을
경력관리업무란 명목을 붙여 협회 위탁한점은 매우불합리하다
(더욱이 수수료명목으로 건당 12 만원을 받도록 한 것은 위법한것이다)

현재 시.구청에 선임신고 구비서류는

- 1.선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3.신고서
- 4.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로서

이중에 협회에서 경력확인후 발급 받은수첩은 제외하고
대신 해당건물 등급규정에 맞는경력확인서와 해당자격증을 시청에 제출하면
선임신고가 원스톱으로 끝나는것이다

시정요청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신고 절차간소화 하기위하여 관할 시.구청에서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때 경력신고서를 바로 시.구청으로 제출하여
원스톱으로 처리될수 있도록하여 국민들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

개선후→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구비서류 :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해당자격증)

선임신고서 접수후 시.구청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발급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신고필증은 프린터출력가능한 이미지또는 PDF 파일로
신고자한테 문자또는 메일로 보내주는방법을 선택하고,
신고필증은 출력하여 문서로 보관 하도록한다
(요즘 신분증 및 자격증등은 휴대하지않고, 휴대폰앱으로 확인하는 시대에 따라
문서로보관또는 핸드폰에 이미지로저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전기협회에 위탁업무대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구비서류에 경력확인서필요한 등급은 협회에서
확인후 수첩이 아닌, 선임신고확인서(증명서를) 신고자한테 보내주면
인쇄 출력하여 문서철에 보관하고 있다

[선임신고관련 보충설명]

Ex : 100 번건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Ac 라는 근로자는

2023 년 기계설비 선임신고를 하기위하여 건물등급에 맞는 경력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수수료결재(12 만원)후** 수첩을 발급받아 시청에 선임신고를 하고 근무중 이때부터 건물관리자 Ac 라는 사람은 협회에 경력관리를 받을사항이 없는것이다 (그러나 협회에서 매년관리비명목으로 50,000 원을 받고있다)

그러다가,

몇 년후 100 번건물관리자 Ac 라는 사람이 퇴직을하고 200 번건물관리자로 이직하였을경우, 이때 Ac 라는 사람은 협회에 경력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수료(12 만원)을 또지불하고 수첩을 발급받게 되는데 협회는 이때경력관리업무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협회에서 매년관리비명목으로 50,000 원을 받고있다)

여기서도 또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협회에서 발급받은 수첩은 다른건물로 이직할때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것이다 (수수료 12 만원추가부담)
(현재수첩에는 등급과 **해당건물 주소가 있기때문에**)

다른업종의 자격증 및 수첩등은 인적사항과 거주지주소만 기록되어있어 이직을 하더라도 어디서나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을 기계유지관리자 선임신고필증으로 변경하고

선임등급만 표시하고 건물명과 주소를 삭제하여 등급에 맞는 근무할건물에 등급에 맞으면, 이직시 시.구청에 선임신고만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근무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현재근무중인 건물에서 다른곳 다른건물로 이직할경우도 기계설비유지관리등급이 전근무지와 동일할경우 최초선임신고한 선임필증과 재직증명서를 이직한건물관할시.구청에 제출하여 선임신고필증을 받을수 있도록 하며,

이직한건물의 등급이 다를경우와 등급자격증이 변경(취득) 되는경우(ex:초급->중급) 최초 선임신고시 구비서류(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해당자격증, 증명사진 1 매) 제출한다

자격증,수첩발급.선임신고방법 타업무와 비교표

(건축물관리업무)

업무구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타업종 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p>1. 먼저 위탁업체 에서 등급수첩발급 받은후</p> <p>2. 행정기관에 선임신고</p> <p>* Two-stop 방식</p>	<p>행정기관또는 위탁업체에 선임신고</p> <p>* One-stop 방식</p>
선임신고 수수료	<p>위탁업체 수첩발급수수료 건당 120,000 원</p> <p>행정기관 =무료</p>	<p>전기관리자협회위탁 4,700 원</p> <p>행정기관= 무료</p>
경력관리비	<p>위탁업체에서 매년 50,000 원수납</p>	<p>경력관리비란 항목이없다</p>
수수료 관련규정	<p>법령,행정규칙,별표에 수수료 경력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않다</p> <p>명시되어있는 내용은 국토부고시중에 협회경력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p>	<p>법령,행정규칙,별표등 중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p>
선임신고전반에 소요되는비용 (이직및건물변경근무시)	<p>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최초 120,000 원</p> <p>이직 및 관리건물변경시마다 120,000 원추가비용발생</p> <p>근무중 매년 50,000 원</p>	<p>전 기 47,00 원 (위탁업체)</p> <p>소 방 =무료</p> <p>승강기=무료</p> <p>가 스 =무료</p> <p>(이직 및 건물변경시 동일)</p>

시정전,후 비교표

현 재	개 선 후
<p>수첩발급 및 선임신고절차</p> <p>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신고서제출→수첩발급신청 →수수료결제(12만원)→접수완료→수첩발급 (구비서류: 경력신고서,해당자격증사본) →협회에서 수첩택배발송→수첩도착 (약 15 일소요)</p> <p>②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구비서류 :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사본)</p>	<p>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업무 위.수탁규정 삭제-(계약취소) (시행령15조 위탁업무삭제) 사유: 업무효율증대 및 시민불편해소 비용부담감소</p> <p>②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구비서류 :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 *선임신고시 구비서류추가 제출 경력확인서,해당자격증</p> <p>선임신고후 선임신고필증 전자문서로 신고자한테 송부</p>
<p>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발급-협회 택배우편으로 발송</p>	<p>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필증으로 명칭변경 선임신고후 시.구청에서 전자문서(PDF) 로 신고자한테 송부 신고자는 필증을 출력하여 문서철에 보관함</p>
<p>협회에서 수첩발급등록자로부터 경력관리비 명목으로매년 5만원씩 수납</p>	<p>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업무 위.수탁 삭제(취소) 함으로서 문제해결</p>
<p>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업무 협회위탁</p>	<p>시.군구청 선임 신고시 경력등급및자격증확인</p>
<p>[기대효과]</p> <p>선임신고 절차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불편함과 불만사항이 해소하고, 비용발생을 최소화 하여 해당근로자 및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이 감소됨</p> <p>협회에 부당이익을 주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형평성에 맞아 불만의 소지가 없어질것으로보임</p>	

협회위탁업무중 1.유지관리교육에 관한업무 2.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두가지 업무는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업무라는 것은

해당건물 등급에 맞는 경력확인은 해당업종 재직증명서로 확인만 되는 단순업무로
건당 수수료를 12 만원 받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한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확인 하여주시고, 어떤방법으로 시정조치
할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관련근거자료]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발급 수수료,경력관리비규정

- 2. 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비 매년 50,000 원
-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수수료 12 만원 (경력관리비 50.000 원 + 수첩발급 70.000 원)

2. 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비 매년 50,000 원

수 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참 조 업체(기관)대표

제목 2024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비(연간) 납부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경력관리 비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근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고시 제2021-75호, 2021.2.2) 제18조 제5호

나. 납부 대상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자

다. 경력관리 비용 : 2024년도 경력관리비 50,000원/매년

라. 납부 방법 : 붙임 참조

붙 임 : 경력관리비 납부 방법 안내 1부. 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 인



담당 기계설비법센터

시행 (문서번호) 설비협 법센터24-51호 (시행일) 2024. 2. 7. 접수

우 0606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3층 / <http://www.kmcca.or.kr>

전화 1661-3344 팩스 02)6240-1115 / kmcca1173@naver.com / 공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발급수수료 12 만원 (경력관리비 50.000 원 + 수첩발급 70.000 원)

[관련근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75 호, 2021. 2. 2., 제정]

제 6 장 경력관리위원회

제 18 조(경력관리위원회)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 6 조에 따른 학과 인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 16 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9 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 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 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 18 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위탁업무현황

1. 유지관리교육에 관한업무
2.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3.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업무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0. 4. 1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345 호, 2020. 4. 18.,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0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 법령	위탁기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3.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736 호, 2023.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498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 기재 포함한다)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나. 기계설비법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업종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전자적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기관에 통보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75 호, 2021. 2. 2.,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4585

제3조(업무의 위탁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시행령15조 위탁업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관련자료

1 선임자격 및 선임인력기준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8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발전설비	<p>1.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10만V미만/2,000kW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10만V미만/2,000kW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10만V미만/1,500kW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산업기사 이상 <p>2. 기계설비(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압력 100kg/cm²미만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p>3. 토목설비(수력발전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kg/cm²미만 도수로, 서지탱크, 방수로 등 수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p>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kW이상 : 전기2, 기계2 ○ 10만kW이상~50만kW미만 : 전기2, 기계1 ○ 1만kW이상~10만kW미만 : 전기1, 기계1 <p>2. 분야별 보조원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선임신고기관 :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2 선·해임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가. 선·해임 증명서 발급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 발급신청 : 선임신고자

나. 선·해임 증명서 발급수수료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제44조

- 수수료 : 4,700원 (회원3,000원)